

퇴직 후,
당당하게 퇴직하세요!
공정하게 시작하세요!
뜻뜻하게 일해주세요!

청렴한 공직자의 품격
퇴직 후에도 함께합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 누리집



접속주소 | <https://www.gg.go.kr/audit/>
문의전화 | 031-8008-2973(취업 심사)
031-8008-3846(재산변동 신고)
031-8008-2089(기타 제도 안내)
031-230-4535(소방직 안내)

인사혁신처 공직윤리시스템



접속주소 | <https://www.pelli.go.kr/>
상담센터 | 1522-4273

05. 부정한 청탁·일선 행위 금지 의무

부정한 청탁·일선 행위 금지 의무란?
(법 제18조의4)

의무 대상

- 퇴직한 모든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금지 행위

-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의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일선

위반 시 제재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29조제3호)

참고 청탁금지법(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부정행위 유형 규정 제5조 제4항)

※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부정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① 인가·허가·면허·승인·검인 등에게 대한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② 각종 행정처분 또는 행정과제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검정·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 ③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해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④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불리하도록 하는 행위
- ⑤ 공공기관 주관의 수상·포상, 우수자 선발 등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 등이 선정 또는 불리하도록 하는 행위
- ⑥ 인찰·인계·기밀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⑦ 계약·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 등이 계약 당사자로 선정 또는 불리하도록 하는 행위
- ⑧ 보조금·장려금·기금 등을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⑨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 등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 ⑩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평가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등
- ⑪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 등 조사·대응에서 특정개인 및 단체를 선정·배제하도록 하거나 조사 결과를 조작 또는 묵인하게 하는 행위
- ⑫ 부정부정행위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 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 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06. 이해충돌 방지 및 비밀엄수 의무

이해충돌 방지 의무란? (법 제2조의2)

·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특정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부당한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되고, **제3자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토록 해서는 안 된다**

· 또한, 퇴직 후 재직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비밀엄수 의무란? (국가공무원법 제60조)

· 모든 공무원들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

참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범위

- ①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 ②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 ③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 ④ 그 밖에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청렴의 의무란? (국가공무원법 제61조)

· 모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태·응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음**



한눈에 보는

퇴직 후 반드시 지켜야 할 행위(제한) 의무
공직자윤리법

새로운 시작과 빛나는 미래를
응원합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

10. 재산변동 사항 신고

재산변동사항 신고란? (표제6조)

...
신교 대상

- 재신등록 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4급이상 공직자)
※ 특정보여(감사, 회계, 인허가, 조세, 부동산 유관부서 등)는 5급 이하 공직자도 대상임

 신고 내용

- 최종 재산신고 기준일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재산변동 사항

신고 기간

- 퇴직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앙의 고백

- 공직윤리시스템(
- www.peti.go.kr
-) 로그인 후 신고

🗨️ 위반 시 제재

- 재산등록을 거부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4조제1항)
- 재산등록을 기간 내에 미치지 아니한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30조제3항제2호)

참고 1 취업승인 사유 (법시행령 제34조 제3항)

4. 국가의 보상의 여부나 국가의 대외정책 변화의 공표의 이익을 위하여 취임 필요한 경우
5. 직제와 승진의 개성·배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파직된 경우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제정하는 취업회사 대상기관의 경영개선은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가기술직종에 따른 본인의 자격사항으로 해당 산업 분야의 발전과 임직자를 진흥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8. 병원의 조직 또는 병원의 구상에 따라 해당 취업회사 대상기관의 관리이나 임직자로 선임되는 경우
9. 채용예정자 대상 기관의 통한 전문직직, 기법의 요구되는 위치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인원을 충당하여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경우
10. 본인이 직접 설립하였던 병원과 취업하는 취업회사 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 없고 취업 후 정당한 업무와 취업하는 기능직의 업무는 경우
11. 기업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따라 조직 신설 또는 신설인 소속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차별, 관리·비도과 취업예정자의 직급에 따른 업무의 성격과 고려할 때 취업 후 정당한 업무가 되는 경우
12. 취업예정의 본인이 다른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던 또는 연구기관에서 근무하여 그 전문분야에 상당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정당한 업무기능직의 업무는 경우

02. 취업제한 제도

취업제한 제도란? (법 제17조 및 제18조)

- 재산등록의무지였던 토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3급 이하) 또는 기관(2급 이상)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인사혁신처 고시)'에 취업이 제한됨

- 단, 민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 ① 취업제한여부에 대해 확인받거나
 - ② 취업승인을 받든 경우에는 취업 가능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

특정 진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장기관(심사대상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필요 2) 여부를 심사
⇒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없는 경우는 '취업가능'

〈취업승인 심사〉

미정호「권력」성이 있어 취업이 제헌피리드 보령에서 정화 취업승인 사유를고
해당 여파를 심사
취업승인 사유가 인정되면 「취업승인」
⇒

- 신청시기 : 취업 개시 30일 전

임의 측정 시?

-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후적인 취업상사를 통해 업무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 '취업제한' 결정 및 '취업해제' 조치
 - 고발*·여부 심사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최영심사 대상기관은? (보 제17주제1항)

- 인사혁신처 고시 대상기관('25.12.31.) : 26,285개
- (영리, 간접, 간접, 특장분야) 22144개(비영리) 4,141개
- (고 '26.6.30. 철폐 추가) 1,417개
- ※ **도** 공영기관 지정) : 경기도교통공사,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재단)
- ※ '26.11.부터 간접, 간접분야(설계, 강의)의 취업상대기관 확대
- 대상기관 조회 : 공직몰리시스템(PETI)
- 취업·행위제한 ▶ 취업상대기관(거점·조회)

03. 업무추진제한제도

업무추진제한 제도란? (보 제18조의2)

- 모든 공직자(재정·노동부 및 직급 무관)는 재직 중 재정 보조, 인·허가 등 업무를 직접 처리했다면 취업한 기관에서 해당 업무의 취업이 영구적으로 제한됨
 - 특히, 2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재직 중 직접 처리했던 업무 외에도 퇴직 전 2년간 소속 기관이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대해 처리한 취업제한 업무(청고장)를 맡는 것이 제한됨
 -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추진 승인 심사를 받아 공공의 이익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업무취급이 가능함
- 신청시기 : 재향안무 취업 진취형 전, 후 모두 가능

2. **기초마장포차대형인식조사**

- ④ **본인업무기준** 심사대상자(3급 이하 모든 공직자)
▷ 재직 중 직접 처리했던 '취급제한 업무(참고 2)'
기판과 취업상사 대상기관'과 관련된 '취급제한 업무(참고 2)'
- ⑤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2급 이상 모든 공직자)
▷ 재직 중 직접 처리했던 '취급제한 업무' + 퇴직 2년과 1. 소속

〈사람의 마음〉

어마초크그 제하에노 불구하고 과학국지야리아원회문과다

- 기름
- ① 국가인보상의 미유나 공금의 이익 등을 위해서 해당 강박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고
 - ② 그 취입이 해당 강박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받은 경우 취입이

제도 위반 시? (법 제29조제2호, 제30조제1항)

- 본인이 직접 차한 '취급제한 업무'를 취급한 경우
 - 고발*어부 심사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퇴직 전 2년간 소속기관과 '취급심사 대상기관'간 처리한 '취급제한 업무'를 취급한 경우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04. 업무내역서 제출 및 취업사실 신고

업무내역서 제출? (보 제18조의3)

- 기관업무기준 취업상사 대상자는 퇴직후 2년간 취업한 기간 (심사대상기관)에서의 업무내역을 제출해야 함
- 퇴직일로부터 1년 경과 후 1개월 이내(2회 제출)
- 업무내역서 미제출 및 거짓 제출 시 제재
- 1차: 6개월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 제30조제3항9호)

추첨사실 신고 및 취업이력응시란? (보 제19조의4)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 대상자는 퇴직후 10년간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함
- 공직직무능력위원회의 매년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 대상자의 취업이력을 조사하여 다음해 6월 30일까지 공시 (소속기관 대표 누리집)
- 취업사실 1개월 이내 미신고 시 제재
 - 1차미보고 이의의 과태료 부과(법 제30조제3항제1호)



참고 2

- ④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조도·정당도의 응을 배정·지급하는 재정 보조제 제공하는 업무
- ⑤ 자간·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⑥ 생산행정, 규격·경리 등에 관한 검사·검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⑦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⑧ 관세, 용역 또는 물품구매의 계약·검사·감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⑨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구호하는 업무
- ⑩ 취업성서·배우자결연의 당사자여기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 ⑪ 업무처리의 방법 등에 따라 취업성서 대상사건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